

제245회 영등포구의회  
2023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 
조례안」

# 檢 討 報 告 書

【임헌호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3. 6. 20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玉 然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#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138호로 2023년 5월 4일 임헌호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~제2조)

나.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라. 소속 공무원의 지도·감독권에 대한 사항 (안 제6조)

마.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예우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,

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.

다. 입법예고(2023. 4. 25. ~ 4. 29.)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「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」에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### 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·발전시킴에 있음을 명시함.
- 안 제3조(지원)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, 운영 및 교육·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5조(지원 신청 및 정산)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함.
- 안 제6조(지도·감독) 및 안 제7조(예우)에서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·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하여 표창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.

○ 검토 결과

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, 지원 범위 및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바른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바른게살기운동을 선도(先導)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른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함으로써 바른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·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“바른게살기운동조직”이란 바른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.

**제3조(출연금의 지급 등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른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(出捐金)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른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4조(국유시설·공유시설의 사용)**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른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·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**제5조(자료의 제공 요청)** 바른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른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6조(연구지 등의 발간)** 바른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른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연구지, 홍보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.

**제7조(보조사업계획서 제출)** 바른게살기운동조직은 다음 연도의 보조사업 예산을 요구하려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보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)** 마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그 증명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